

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

업체명				
대표자				
생산제품명				
사용원료	주원료(주재료)		부원료(부재료)	

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
전통식품을 생산할 때 주원료(주재료) 전량을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자 (서명 또는 인)